

진정서

진정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 60개 단체 및 3195명 개인
 진정인의 대리인 변호사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피진정인 기독교자유당

위 진정인들의 대리인들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정당 활동에서 피진정인이 행한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진정인들의 지위

가. 피해자 겸 대표 진정단체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들의 연대체이고, 피해자 겸 대표 진정단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나. 피해자 겸 성소수자 대표진정인 남○○, 이○○, 박○○ 외 7인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성소수자 인권단체 회원이자 성소수자로서 피진정인의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에 의하여 차별의 조장, 증오의 선동, 혐오표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 피해자 겸 무슬림·이주민 대표진정인 ○○○, ○○○, ○○○ 외 7인은 무슬림으로서 피진정인의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에 의하여 차별의 조장, 증오의 선동, 혐오표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 피해자 겸 성소수자 가족 대표진정인 홍○○, 전○○은 성소수자를 자녀를 둔 부모이고, 피해자 겸 무슬림 가족 대표진정인 정○○은 무슬림을 남편으로 둔 사람으로서 피진정인의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에 의하여 차별의 조장, 증오의 선동, 혐오표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 이외의 진정인들은 성소수자 또는 무슬림, 이주민 당사자들과 성소수자와 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와 사람들입니다.

2. 피진정인의 지위

피진정인 기독교자유당(대표 손영구)은 지난 2016. 3. 3. 창당된 정당으로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회장 등의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이 다수 결합한

“기독교 정신에 의한” 정치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으로서, ‘유네스코 통계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반항아 1위’와 같은 허위사실 등을 바탕으로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합법화” 반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피진정인은 오로지 성소수자, 무슬림 등 사회의 구성원 이자 소수자들을 ‘불법화’시키고자 하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념, 이러한 평등원칙을 구현하는 법안으로서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목적, 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여 “기독교정 치”, “복음통일” 등의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정당의 형 식을 빌어 추구하는 목적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과 평등권에 대한 부정, 헌법상 제20조의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는 특정 종교에 의한 지배로서, 그 정 당의 목적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창당취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130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대한민국 건국, 6·25전쟁, 새마을운동,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는데 항상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역사에 가장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 업적을 이루었고, 세계경제 11위의 대국을 이루었지만 그 뒤에는 대한민국에 어두운 그림자가 덮고 있다.

세계 OECD국가 중 자살율 1위, 이혼율 2위, 청소년 흡연을 세계 2위, 교통사고율 1위, 유흥업소에 종사자 200만 이상, 양주소비량 1위, 인터넷도

메인 음란 접속율 1위, 유네스코 통계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 반항아 1위, 나라의 존재를 위협하는 저 출산율 1위, 한 사회의 악을 가늠하는 형사 소송율이 일본의 10배, 니트족 80만 육박, 무속인 70만 명, 어린이 유괴 1년에 수천명, 세계제일의 강성노조와 중복좌파 세력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큰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세력들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그 모든 해결책은 기독교자유당을 통한 기독교정치 밖에는 없다는 것을 공감하고 한국교회 원로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독교자유당 발기인대회를 갖게 되었다. 이번에는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기독교정치운동에 참여하여 반드시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시대적 사명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복음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4.13 총선에 참여하여 기독교자유당 국회의원을 국회에 진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 교단별 원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1월 25일 기독교자유당 고문단을 결성하였다. 이어서 1월 29일 기독교인 백만서명 발기인대회를 열었고,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동참하여 3월3일(목)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독교자유당 창당대회를 하였다.

이제 한국교회는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다가오는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 새

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원한다.

3. 피진정인의 차별행위

가. 피진정인은 대한민국을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세력들”(기독교자유당 취지문)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의 20대 총선 선거공보에는 “동성애 법제화 반대”, “이슬람 특혜 반대”, “반기독교법 저지” 등의 공약이 실려 있습니다. 기독교자유당은 해당 선거공보와 노태정 비례대표 후보자 연설, 각종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 ‘할랄단지를 조성하면 무슬림 30만명이 거주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테러 위험국이 된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전도가 금지된다’ 등의 공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와 무슬림을 위협한 사람들로 규정하여 한국 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종용합니다. 피진정인은 20대 총선이 종료된 지금도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반기독교법 반대’를 주장하며 ‘한국교회 1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선동과 증오조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 제17조에 의해 사생활의 자유를, 제20조 제1항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와 무슬림 또한 헌법에 의해 이러한 기본권을 향유합니다. 기독교자유당과 같은 정당의 형식을 가진 단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닙니다.

다.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UN 자유권위원회는 각국이 성소수자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고 이 조문을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 대한 자유권규약 심의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고, 2015년 대한민국에 대한 심의에 있어서도 자유권위원회는 ‘차별금지’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여러 문단을 할애하여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경한 권고를 내렸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3개의 주요 권고 사항으로 선정하여 1년 안에 대한민국이 자유권 위원회에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라.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비준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제1조 제1항)인 인종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 활동”,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차별행위자 범죄로서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처벌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제4조). 문언상, 그리고 UN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등의 해석상 무슬림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차별선동은 ‘특정 인종성과 결부된 소수가 믿는 종교’인 이슬람교를 믿는 ‘인종-종교적 집단 (ethno-religious group)’에 대한 인종차별에 해당합니다.

마. 헌법 제10조와 제11조,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 위 대한민국이 체결하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에서 행한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선동과 증오심의 고취는 그 자체로 명문상‘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

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인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제1조, 제2조 제1호). 또한 이 법은 “성별, 종교, … 출신 국가, 출신 민족, … 인종, 피부색, …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에 있어 차별이 발생한 경우 이를 “평등권 위반의 차별행위”(제2조 제3호)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 제1항).

사. 위와 같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차별선동 및 증오의 고취는 그 자체로 문언상 차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으로도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등 사회의 전 영역에서 배제하도록 공론과 정치의 장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을 넘어 그 편견과 낙인을 공유하고 연계하여 차별을 받는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의 가족들 역시 이러한 피해를 받는 직접 당사자입니다.

아.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행위들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그 위헌성과 위법성, 차별행위 해당성을 확인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2016. 4. 13. 시행된 20대 총선 결과 기독교자유당은 정당득표율 2.64%를 기록하여, 원내 진입에는 실패하였으나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이 되었습니다. 2016년 3-4분기 동안 기독교자유당은 4억원을 넘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며,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 한 해 기독교자유당에 지급되는 경상 및 선거보조금의 액수는 19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의 재특회, 유럽의 네오나치, 미국의 KKK와 같은 주장을 하는 단체가 정당의 형식을 빌어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 자체 역시도 차별행위이자 범죄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인종차별철폐협약의 내용과 같습니다.

차. 지난 2015. 11. 5.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전반에 관한 권고문에서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소수자(LGBTI)에 대한 폭력, 혐오발언과 같은 심각한 차별적 태도”에 대하여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다른 시민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피진정인의 존재는 이러한 우려의 근거이자 징후입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최근의 보고서에서 “소수 인종에 대하여 공격하고 차별하고 차별을 촉진하는 극우와 네오나치 집단들은 성소수자들을 공격하는 집단과 같은 집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contemporary forms of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A/HRC/32/49, 7 April 2016). 피진정인의 행위는 이처럼 인권규범

의 견지에서 상징적이고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카. 무엇보다, 정당의 행위 역시도 당연히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거액의 정당 국가보조금을 받는 공당의 형식으로 국가재정의 지원을 받으며 헌법상 평등원칙과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는 목적의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차별 선동 집단(hate group)’이 더욱 공식적이고 조직적으로 위와 같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의 지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행한 선거운동과 현재의 정당활동은 헌법이 정한 기본권과 가치, 국제인권규범 등을 크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타.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의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이러한 차별행위를 중단할 것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 국가보조금 등 공적 자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권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 결어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자행하는 차별선동 및 증오심의 고취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침묵으로써 피진정인의 차별과 증오에 동의하지 않기 위하여,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62개 인권·시민·사회·여성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 당사자들 및 성소수자와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유례없이 다수 참여한 이 사건 진정에 대하여 그 무게에 걸맞도록 올바르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 | | |
|-----------|----|
| 1. 진정인 목록 | 1통 |
| 1. 위임장 | 1통 |

2016. 5. 24.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류 민 희

변호사 조 혜 인

변호사 한 가 램

국가인권위원회 귀 중